



검 토 보 고 서

연번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의 안 명	쪽
1	458	검단구청장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15
2	459	검단구청장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28
3	460	검단구청장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36

2026. 7. .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사무과장(직무대리)정홍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58

I. 제안 경위

- 의 안 명: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7월 16일
- 회부일자: 2026년 7월 20일

II. 제안 이유

-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계약기간 만료(2026년 12월 2일) 됨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여 공백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역 사회 내 전문 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III. 주요 내용

-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 대상: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소재지: 검단구 가현로

41, 1층 대원레스피아 아파트)

- 시설 현황: 면적 74.5㎡, 정원 20명, 종사자 2명
- 위탁 기간: 5년 [2026년 12월 3일 ~ 2031년 12월 2일] (기존 위탁 기간: 2021. 12. 3. ~ 2026. 12. 2.)
- 기존 수탁기관: 인천방과후사회적협동조합
- 위탁운영 주요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및 평가·모니터링
 - 돌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이용아동 모집·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건강·급간식·위생·안전관리
 - 학부모 상담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 수탁자 선정 방식: 기존 법인 대상 재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하며,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규 선정
- 소요 예산: 5년간 총 1,279백만원 (국비 430백만원, 시비 421백만원, 구비 427백만원)

IV.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지방자치단체장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의 위탁 기준과 방법, 계약 내용(5년 이내의 위탁기간 등)을 명시함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 요건을 규정함

2. 위탁(재위탁)의 필요성

- 방과 후 돌봄 공백 방지 및 연속성 확보: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운영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아동 복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에 시설 운영을 맡김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과 내실 있는 안전·위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사무 및 시설 개요 및 재원 적정성

- 시설 현황: 검단구 마전동 대원레스피아 아파트 내 위치(면적 74.5㎡, 정원 20명)하여 아동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양호하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 재원 조달의 적정성: 5년간 총 1,279백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재정 부담 요인 점검: 연도별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연 2.5%) 반영에 따라 향후 구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면밀한 세출 관리 및 재원 대책 마련이 요구됨

4. 수탁자 선정 방식의 타당성 및 잠재적 문제점 검토

- 재위탁 심사 기준의 실효성 확보: 기존 수탁기관(인천방과후사회적협동조합)의 재위탁 기준인 '평균 80점 이상'은 장기 운영에 따른 매너리즘이나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나, 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공개모집 전환 시 행정 공백 우려: 만일 심사 결과 80점 미만으로 판명되어 신규 수탁자 공개모집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 만료 시점

(12월 초)까지 수탁자 선정이 지연되면 자칫 현장 운영 공백이나
인수인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5. 종합 의견 및 권고사항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절차로 판단되며, 특별한 법적·행정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음
- 다만, 향후 집행 과정 및 제도 운영에 있어 다음의 보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엄격하고 투명한 재위탁 심사: 기존 법인 재위탁 심사 시 지난 5년간의 회계 투명성, 지도점검 지적 사항,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만족도 등을 엄격히 반영하여 형식적인 연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
 -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 재위탁 심사 결과 기준 미달로 신규 공개 모집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의안 의결 즉시 공고 일정 및 선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돌봄서비스 운영 공백을 원천 차단할 것
 - 종사자 처우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정원 2명의 소규모 종사 인력 체계에서 오는 피로도를 경감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확립할 것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④ (이하 생략)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8
----------	-----

제출연월일 : 2026년 7월 16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법인의 위탁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돌봄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돌봄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위탁사무의 목적 :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5년 [2026년 12월 3일 ~ 2031년 12월 2일]

- 기존 법인 위탁기간 : 2021년 12월 3일 ~ 2026년 12월 2일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기존 위탁기관
		면적	정원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가현로 41, 1층 (마전동 대원레스피아 아파트)	74.5㎡	20명	2명	인천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사무 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평가 모니터링,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이용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돌봄아동 건강·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 돌봄아동 보호자와의 상담 및 운영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수탁기관 결정

-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기존 법인에 재위탁하며, 평균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함.

- 기대효과

- 아동 및 보호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완화
-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지역 인력의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비용추계서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산정의 기준연도는 2026년도로 하였으며, 추계기간은 위탁기간인 5년으로 함.
- 인건비, 임금보전비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연 2.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및 학습교구비 등은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도 기준 금액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나. 추계 결과

- 본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추계기간 5년간 1,279백만원으로 산정되며, 재원구성은 국비 430백만원, 시비 421백만원, 구비 427백만원임.

다. 재원조달 방안

-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임금보전비는 시비 50%, 구비 50%, 추가운영비는 전액 구비
-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건강검진비, 복지점수, 학습교구비는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 검토 의견

-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연도별 비용추계 표는 자체 재원 세입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함.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2.5%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며, 추계 기간 5년간 구비 427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 다함께돌봄센터의 비용 증가가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보조금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구비 소요액으로 진행하도록 검토 의견 회신함
- 본 내용은 비용추계에 대한 사전 협의 의견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조정안은 아니며, 향후 실질적인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부서와 소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수정)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37,840	275,680	282,590	288,362	295,109	1,279,58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국·시비)			91,693	183,386	188,344	192,050	196,865	852,33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구비)			46,147	92,295	94,247	96,312	98,245	427,246
세 출			137,840	275,680	282,590	288,362	295,109	1,279,58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3,400	26,800	27,280	28,000	28,000	123,48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79,277	158,553	162,486	166,548	170,711	737,575
다함께돌봄센터 임금보전비			33,956	67,913	69,610	71,350	73,134	315,963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3,600	7,200	7,200	7,200	7,200	32,400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검진비			800	0	800	0	800	2,400
다함께돌봄센터 복지점수			675	1,350	1,350	1,400	1,400	6,175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54,000
다함께돌봄센터 학습교구비			932	1,864	1,864	1,864	1,864	8,388
재원 조달			137,840	275,680	282,590	288,362	295,109	1,279,581
의 조 원	소 계		91,663	183,385	188,343	192,050	196,864	760,733.6 63
	보조금	국비	46,314	92,676	94,882	97,274	99,355	430,501
		시비	45,349	90,709	93,461	94,776	97,509	421,804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	-	-	-	-	
자체 수입	소 계		46,177	92,295	94,247	96,312	98,245	427,276
	구비		46,177	92,295	94,247	96,312	98,245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59

I. 제안 경위

- 의 안 명: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7월 16일
- 회부일자: 2026년 7월 20일

II. 제안 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법인의 위탁계약기간 만료(2026. 11. 30.)에 따라, 현 위탁기관이 피해아동 보호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쉼터 운영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위탁계약 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아동 보호·치유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함

III.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 기간: 5년 (2026. 12. 1. ~ 2031. 11. 30.)
- 대상시설 현황: 1개소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 마전동 영남

- 탐스빌아파트 101동 1202호, 면적 119.94㎡, 정원 7명, 종사자 3명)
- 기존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 (위탁 기간: 2021.12.1. ~ 2026.11.30.)
 - 수탁기관 결정 방법: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 모집 후 신규 수탁기관 선정

IV. 검토 의견

- 총 소요비용: 1,773백만원 (추계기간 5년 기준)
- 재원구성: 국비 590백만원, 시비 1,183백만원
- 연도별 추계 요약
 - 1차년도(2026년 하반기): 186,530천원
 - 2차년도(2027년): 382,763천원
 - 3차년도(2028년): 391,493천원
 - 4차년도(2029년): 401,658천원
 - 5차년도(2030년): 410,861천원

V. 검토의견

가. 타당성 및 준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서로 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려는 사항임
-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함

나. 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식 검토

- 현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의 계약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평가(80점 이상 기준)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인 절차로 판단됨

- 다만, 심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즉시 공개 모집 절차로 전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다. 재정적 측면 검토

- 향후 5년간 총 1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학대 피해 아동의 긴급 보호, 심리치료 및 24시간 돌봄을 위해 필수 불가결인 경비임
- 본 사업은 아동 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국가 필수 보호 사무인 만큼, 향후 매년 예산 편성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VI. 결론

○ 종합 의견

-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보호가 시급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신 회복·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 절차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이행하려는 사안임
-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특성상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타당함

○ 향후 정책 제언

-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 진행: 재위탁 심의 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 운영 실태, 아동 인권 보호 수준,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임. 기준 점수

(80점) 미달 시에는 신속하게 공개 모집으로 전환하여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 종사자 처우 및 시설 안전 강화: 24시간 교대 근무 등으로 근무 강도가 높은 쉼터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체계적인 사후 관리: 퇴소 아동의 원가정 복귀 또는 자립 지원 과정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최종 검토 의견

-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조례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아동 인권 보호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원안 검토’ 함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④ (이하 생략)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9
----------	-----

제출연월일 : 2026년 7월 16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1.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법인의 위탁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현 위탁기관이 피해아동 보호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쉼터 운영역량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인지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치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위탁사무의 목적 :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안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5년 [2026년 12월 1일 ~ 2031년 11월 30일]
 - 기존 법인 위탁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 위탁대상 시설현황 : 1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기존 위탁기관
		면적	정원		
서로이음	완정로 64번길 7, 101동 1202호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119.94 ㎡	7명	3명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

- 위탁 사무 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평가·모니터링, 보호·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입소아동 보호·관리 및 종사자 채용·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피해아동 건강·급·간식·위생·안전관리 및 긴급 의료·심리 지원
 - 피해아동 보호자와의 상담 및 운영위원회 운영
 -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수탁기관 결정

-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재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기존 법인에 재위탁하며, 평균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함.

○ 기대효과

- 아동 중심의 안전한 긴급분리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심신 회복 도모
- 심리치료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재학대 발생 방지
-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지역 인력의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비용추계서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동복지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산정의 기준연도는 2026년도로 하였으며, 추계기간은 위탁기간인 5년으로 함.
- 인건비, 임금보전비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연 2.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종사자 복지점수,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등은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도 기준 금액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나. 추계 결과

- 본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추계기간 5년간 1,773백만원으로 산정되며. 재원구성은 국비 590백만원, 시비 1,183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는 국비 40%, 시비 60%
- 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임금보전수당은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 검토 의견

- 아동복지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연도별 비용추계 표는 자체 재원 세입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함.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2.5%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며, 추계 기간 5년간 국비 590백만원, 시비 1,183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비용 증가가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보조금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소요액으로 진행하도록 검토 의견 회신함
- 본 내용은 비용추계에 대한 사전협의 의견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조정안은 아니며, 향후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부서와 소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하반기)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86,530	382,763	391,493	401,658	410,861	1,773,305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국·시비)		154,993	317,734	325,675	333,816	342,160	1,474,378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시비)		31,537	65,029	65,818	67,842	68,701	298,927	
세 출		186,530	382,763	391,493	401,658	410,861	1,773,305	
학대피해아동쉼터인건비		134,632	275,995	282,894	289,966	297,215	1,280,702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		5,750	11,787	12,081	12,383	12,692	54,693	
학대피해아동쉼터사업비		14,611	29,952	30,700	31,467	32,253	138,983	
학대피해아동쉼터총사자 임금보전비		27,112	55,579	56,968	58,392	59,851	257,902	
학대피해아동쉼터총사자 복지접수		825	1,650	1,650	1,650	1,650	7,425	
학대피해아동쉼터총사자 종합검진비		-	600	-	600	-	1,200	
학대피해아동쉼터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3,600	7,200	7,200	7,200	7,200	32,400	
재원 조달		186,530	382,387	391,946	401,745	411,788	1,774,396	
의조원 재원	소 계		186,530	382,763	391,493	401,658	410,861	1,773,305
	보조금	국비	61,997	127,094	130,270	133,526	136,864	589,751
		시비	124,533	255,669	261,223	268,132	273,997	1,183,554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계		-	-	-	-	-	-
	구비		-	-	-	-	-	-
지방채		-	-	-	-	-	-	
기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등)		-	-	-	-	-	-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60

I. 제안 경위

- 의 안 명: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7월 16일
- 회부일자: 2026년 7월 20일

II. 제안 이유

- 현행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 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수탁기관 자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방법: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위탁사무: 점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컨설팅
 - 대상별 맞춤형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지원
 - 연령별·질환별·장애 유형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 일정
 - 8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
 - 9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

IV.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인천광역시 점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및 제168조

V. 비용추계 결과

- 소요예산: 연간 6억 6천만 원 (3년간 총 19억 8천만 원 / 비용추계서 표 기준 5개년 총 33억 원)
- 재원조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40%, 인천광역시 시비 30%, 구비 30%의 의존 및 자체 재원 병행 편성
 자체 재원은 연간 19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VI. 검토의견

가. 타당성 검토

- 본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임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위탁 방법 등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함

나. 유의 사항

-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공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 재정적 능력을 갖춘 우수 기관 등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투명한 집행: 국비(40%), 시비(30%), 구비(3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만큼, 상위 기관의 예산 변동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비 부담분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철저한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 민간 위탁에 따른 공공성 저하를 방지하고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및 사업 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급식 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60
----------	-----

제출연월일 : 2026년 7월 16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1. 제안이유

-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나) 수탁기관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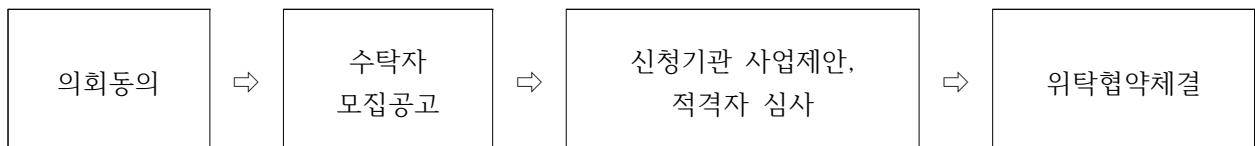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국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다) 위탁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컨설팅
- 대상별 맞춤형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지원
- 연령별·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위탁절차



3. 관련법령

-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4. 추진일정(계획)

- 2026. 8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6. 9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6.11월: 위·수탁 협약 체결

5. 참고사항

-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현황
 - 현위탁기관: (사)대한영양사협회
 - 위 탁 기 간: 2024. 1. 1. ~ 2026. 12. 31. (3년간)
 - 급식소 현황: 어린이집 등 216개소 급식소 등록·관리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2024. 9. 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중략>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준에 따라 급식소 180 개소 이상 관리 규모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6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의안 시행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6억 6천만원으로 추계되며, 연도별 소요액은 붙임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따름.

다. 재원조달 방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40%), 인천광역시 시비(30%) 및 구비(30%)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조달함.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는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센터의 향후 관리 급식소 수 및 예산 편성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작성자 : 안전환경국 식품위생과장(代) 식생활개선팀장 김선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세 출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3,300,000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3,300,000
재원 조달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3,300,000
의조 재원	소 계	462,000	462,000	462,000	462,000	462,000	2,310,000
	보조금	국비	264,000	264,000	264,000	264,000	1,320,000
	지방교부세	시비	198,000	198,000	198,000	198,000	990,000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198,000	198,000	198,000	198,000	198,000	990,000
	지방세	198,000	198,000	198,000	198,000	198,000	99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